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제233회 임시회 (2019. 9. 25.)

서울특별시 마포구 출판문화진흥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정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최 국 모

서울특별시 마포구 출판문화진흥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1. 제출경위

가. 의안번호: 19-108

나. 제 출 자: 마포구청장

다. 제출일자: 2019년 9월 9일(월)

라. 회부일자: 2019년 9월 10일(화)

2. 제출사유

서울특별시 마포구 출판문화진흥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마포구의 출판문화진흥 및 지역문화예술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출판문화진흥센터의 설치(안 제2조)

나. 출판문화진흥센터 주요사업 및 지원(안 제3조, 제4조)

다. 입주자 모집 및 비용의 부과·징수(안 제5조, 제6조)

라. 운영위원회 구성, 기능, 회의(안 제7조 ~ 제9조)

마.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해촉, 수당(안 제10조 ~ 제12조)

바. 운영의 위탁에 관한 사항(안 제13조 ~ 제16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지방자치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2)「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8조(출판문화산업의 기반시설 등 확충)

3)「문화산업진흥 기본법」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4)「문화예술진흥법」제5조(문화예술 공간의 설치 권장)

나.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첨부

다. 기타사항

1) 입법예고: 2019. 8. 1. ~ 8. 21. (제출된 의견 없음)

2) 기획예산과의 행정규제심사 검토결과: 원안 동의

3) 기획예산과의 위원회 사전심사 결과: 원안 동의

4) 여성가족과의 자치법규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원안 동의

5) 감사담당관의 자치법규 부패영향자율평가 결과: 원안 동의

6) 지역경제과의 물가대책위원회 심의 여부 결과: 심의 불필요

4.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출판문화진흥센터의 설치 등 우리 구 출판문화진흥사업 지원 및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 보면 안 제1조, 제2조에 조례의 목적 및 출판문화센터 설치 근거를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3조, 4조에는 출판문화 창업자의 발굴 및 육성 등 출판문화센터의 주요사업 내용을 열거하고 있으며 이를 수행하기 위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 근거를 규정함.

○ 안 제5조 입주자 모집방법을 규정하여 공개모집하도록 하였고, 안 제6조는 이용자에게 비용을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 안 제7조에서 제12조까지 이 센터의 운영 등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서울특별시 마포구 출판문화진흥센터 운영위원회' 구성, 기능 등을 명시함과 아울러 위원의 제척·기피·해촉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여 운영위원회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있음.

○ 안 제13조에서 제16조까지는 센터 운영의 위탁에 관한 사항으로 출판문화진흥센터의 운영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고 규정하였고 수탁자에게 센터의 운영결과를 반기별로 보고토록 하여 운영 내용 및 사업성과 등을 지도·감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바, 이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하고 있음.

○ 이와 같이 본 조례안의 내용을 살펴보건대, 이 센터의 설치와 운영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를 규정한 「지방자치법」 제9조에도 합당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출판문화산업의 기반시설을 확충하거나 그 단지를 조성하는 등 출판문화산업의 기반시설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한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제8조에도 부응하고 있다고 사료됨.

○ 다만, 제출된 비용추계서를 보면 센터 운영 1차년도에 임대료, 이용료 등 세입이 215,425천원이고 인건비, 운영비 등 세출이 999,988천원으로 총 비용이 784,563천원이 소요되는 등 향후 5년 동안을 보더라도 총 40억여원의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임을 감안할 때 국·시비 보조금의 확보 등 재원 조달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어야 할 것임.

※ 서울특별시 마포구 출판문화진흥센터 설치 및 운영 비용 추계

(단위:천원)

구분 \ 연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세입	임대료	45,298	45,977	46,667	47,367	48,078	233,387
	관리비	70,467	71,524	72,597	73,686	74,791	363,065
	이용료	76,860	76,860	76,860	76,860	76,860	384,300
	사용료	22,800	34,200	38,000	38,000	38,000	171,000
	소계(a)	215,425	228,561	234,124	235,913	237,729	**1,151,752**
세출	인건비	256,247	260,091	263,992	267,952	271,971	1,320,253
	운영비	480,014	487,214	494,522	501,940	509,469	2,473,159
	시설관리비	263,727	267,683	271,698	275,774	279,910	1,358,792
	소계(b)	999,988	1,014,988	1,030,212	1,045,666	1,061,350	**5,152,204**
□총비용(b-a)		784,563	786,427	796,088	809,753	823,621	**4,000,452**

【 관련 법령 】

<지방자치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5. 교육·체육·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무

나. 도서관·운동장·광장·체육관·박물관·공연장·미술관·음악당 등 공공교육·체육· 문화시설의 설치 및 관리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8조(출판문화산업의 기반시설 등 확충)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출판문화산업의 기반시설을 확충하거나 그 단지를 조성하는 등 출판문화산업의 기반시설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출판문화산업의 기반시설을 확보하려는 경우에는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1조부터 제28조까지, 제28조의2, 제28조의3, 제29조 및 제30조를 준용한다.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산업 진흥을 위하여 기술의 개발과 조사·연구사업의 지원, 외국 및 문화산업 관련 국제기구와의 협력체제 구축 등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문화예술진흥법>

제5조(문화예술 공간의 설치 권장)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 활동을 진흥시키고 국민의 문화 향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문화시설을 설치하고 그 문화시설이 이용되도록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형 건축물에는 문화시설을 설치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③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문화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그 문화시설의 관리를 비영리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참고자료〉

마포구 동별 및 서울시 자치구 출판사 현황

마포구 동별 출판사 현황 (2019.5.26 현재)

순위	동명	출판사(개)
1	서교동	1,049
2	동교동	330
3	합정동	306
4	성산동	279
5	연남동	244
6	망원동	228
7	도화동	225
8	공덕동	204
9	신수동	193
10	상수동	125
11	마포동	98
12	창전동	70
13	대흥동	69
14	용강동	67
15	염리동	67
16	노고산동	65
17	아현동	57
18	신공덕동	34
19	구수동	27
20	현석동	15
21	중동	15
22	상암동	15
23	당인동	8
24	신정동	7
25	토정동	3
26	하중동	3
계		3,803

서울시 자치구 출판사 현황 (2018년 12월 현재)

순위	자치구	출판사(개)
1	강남구	4,222
2	마포구	4,088
3	중구	3,529
4	서초구	3,422
5	영등포구	1,956
6	송파구	1,521
7	성북구	1,389
8	동작구	989
9	구로구	954
10	서대문구	941
11	강서구	904
12	관악구	885
13	성동구	859
14	광진구	792
15	금천구	758
16	양천구	712
17	은평구	699
18	동대문구	692
19	종로구	662
20	강동구	645
21	노원구	456
22	강북구	451
23	용산구	384
24	도봉구	352
25	중랑구	311
계		35,573

마포구 독립출판 서점 현황[1]

연번	서점명	동 명	주 소
1	땡스북스	서교동	잔다리로 28
2	유어마인드	서교동	연희로11라길 10-6
3	베로니카이펙트	당인동	어울마당로2길 10
4	1984	동교동	동교로 194 1층
5	공상온도	동교동	동교로23길 4 지하
6	스몰굿띵	망원동	방울내로7길 23
7	라이프팩토리	상수동	독막로15길 3-3
8	스튜디오 썸띵	상수동	와우산로 29-18
9	오브젝트 홍대점	서교동	와우산로35길 13
10	짐프리	서교동	양화로 156 지하2층
11	사이에	연남동	성미산로31길 13 2층
12	헬로 인디북스	연남동	동교로46길 33
13	책방 피노키오	연남동	연희로 35
14	삼각관계	연남동	동교로39길 10 3층
15	북스피리언스	연남동	연남로11길 34 지하1층
16	일단멈춤	염리동	숭문16가길 9
17	퇴근길 책한잔	염리동	숭문길 206
18	초원서점	염리동	숭문16나길 9
19	이후북스	창전동	서강로11길 18
20	프렌테	합정동	독막로6길 30
21	B-Platform	합정동	독막로2길 22 3층

1) 네이버 책문화지기 (2016.4.20)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제233회 임시회 (2019. 9. 25.)

서울특별시 마포구 출판문화진흥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행정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최 국 모

서울특별시 마포구 출판문화진흥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1. 제출경위

가. 의안번호: 19-115

나. 제 출 자: 마포구청장

다. 제출일자: 2019년 9월 9일(월)

라. 회부일자: 2019년 9월 10일(화)

2. 제출사유

출판문화 중심의 '창작활동·창업지원' 공간 및 출판이 다양한 문화적 콘텐츠로 확대·재생산 되는 창조적 복합문화공간인 마포구 출판문화진흥센터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전문성을 갖춘 민간기관에 위탁하고자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3항에 따라 마포구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민간위탁의 목적

1) 생산과 창작이 일어나는 공간으로 에너지를 발산하고 네트워킹 및 커뮤니티 활성화가 필요한 출판문화 중심의 복합문화공간인 센터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창업공간과 문화공간에 대한 이해도가 뛰어나고, 현장 경험이 풍부한 민간 기관에 위탁하여 전문성과 효율성 확보

2) 민간 운영의 창의성과 참신성 및 유연성으로 사업의 조기 정착 도모

나. 민간위탁의 내용

1) 위탁기간 : 2020. 1. 1. ~ 2022. 12. 31. (3년)

2) 위탁운영 시설현황

- 시설명 : 출판문화진흥센터

- 위　치 : 마포구 신촌로2길 19
- 면　적 : 2,438.98㎡ (2층 및 3층 일부)

3) 위탁사무 범위 : 출판문화진흥센터의 운영
- 출판문화 중심의 입주기업 모집 및 관리, 컨설팅·홍보 등 성장 지원
- 센터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콘텐츠 제공 및 기획·정기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센터를 플랫폼으로 하는 출판문화 진흥 사업 추진 등

4) 소요예산 : 736백만원

5) 수탁기관 선정방법 : 공개모집

6) 수탁기관 선정주체 : 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별도 구성)

다. 추진 일정

1) 공개모집 공고 : 2019. 10. 23.
2) 신청서 접수 : 2019. 12. 3. ~ 12. 6.
3) 선정 심사 : 2019. 12. 9. ~ 12. 13. (기간 중 1일)
4) 심사결과 발표 : 2019. 12. 17.
5) 협약 체결 : 2019. 12. 27.
6) 위탁 운영 : 2020. 1. 1. ~ 2022. 12. 31. (3년)

※ 추진일정은 기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라. 참고 사항

1) 관계 법령
- 「지방자치법」 제9조
- 「문화예술법」 제5조
- 「서울특별시 마포구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제5조
-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의2

4.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출판문화의 중심으로 자리 잡은 마포구에 '서울특별시 마포구 출판문화진흥센터'를 설치하고 그 시설의 운영을 전문성을 갖춘 민간기관에 위탁하고자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 출판문화 중심의 입주기업 모집 및 관리, 컨설팅·홍보업무와 센터를 플랫폼으로 하는 다양한 출판문화 진흥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이 시설의 사무를 고려해보건대 출판문화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전문적 지식을 갖춘 민간단체에 이 시설운영을 위탁하고자 하는 본 동의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 이 시설의 주요 공간계획을 살펴 보면, 2층에 문화공간으로 북&라운지, 쇼윈도, 카페, 다목적실이 설치되며, 창작공간으로 워크 플레이스, 편집실, 멀티미디어실 등이, 지원공간으로 지원사무실, 폰부스, 락커 등이 설치되고 3층 업무공간은 입주공간, 미니 라운지, 회의실, OA룸 등으로 구성됨.

※ 참고자료 - 출판문화진흥센터 시설 현황

❍ 위　　치: 동교동 190-1일대(홍대복합역사 내 공공업무시설)

❍ 규　　모: 2층 및 3층 일부 2,438.98㎡ (전체 지상 5층 5,426.30㎡)

층	용　　도	면적 계(m²)		
		계	전용면적	공용면적
계		**5,426.30**	**4,237.41**	**1,188.89**
소계	(가칭)서울디자인창업센터 (서울시 디자인정책과)	2,987.32	2,332.84	654.48
5		1,083.52	846.10	237.42
4		1,412.11	1,102.76	309.35
3		491.69	383.98	107.71
소계	**(가칭)마포출판문화진흥센터 (마포구 문화진흥과)**	**2,438.98**	**1,904.57**	**534.41**
3		918.12	716.96	201.16
2		1,520.86	1,187.61	333.25
1	전체공용(필로티)	(176.17)		층별공용면적 포함

○ 운영관리 인력으로는 센터장 1명, 총괄 매니저 1명, 매니저 1명, 운영 지원팀 3명으로 총 6명임.

○ 비용추계서에 명시된 소요예산을 보면 사업시행 1차 연도에 임대료, 관리비 등 세입 215,425천원이고, 민간위탁금인 인건비, 사업운영비 736,261천원과 공사공단경상전출금인 시설관리비 263,727천원 등 세출은 999,988천원으로, 세입과 세출 차액 총 784,563천원의 비용이 발생하며 이 재원은 모두 구비로 충당될 예정임.

○ 마포구 등록 출판사가 4,088개로 강남구에 이어 2번째로 많고 '경의선 책거리'를 비롯하여 '한국출판콘텐츠센터',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서울사무소' 등 출판문화 산업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으며 서교동, 연남동을 중심으로 독립출판 서점이 증가하고 있어 '마포출판문화진흥센터' 는 이들과의 상호 협력관계를 형성하며 마포구 출판문화 생태계 발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됨.

○ 다만, 비용추계서를 보면 1차 연도에 784,563천원이 소요되는 등 예산이 수반되므로 관계부서에서는 국·시비 보조금 확보를 위한 공모사업 지원 등 다각적인 재원조달 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임.

【관련 법령】

<지방자치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5. 교육·체육·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무

나. 도서관·운동장·광장·체육관·박물관·공연장·미술관·음악당 등 공공교육·체육· 문화시설의 설치 및 관리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 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문화예술진흥법>

제5조(문화예술 공간의 설치 권장)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 활동을 진흥시키고 국민의 문화 향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문화시설을 설치하고 그 문화시설이 이용되도록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문화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그 문화시설의 관리를 비영리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제5조(보조금의 지원 등) 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지역의 문화예술 진흥과 구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금 등으로 지원할 수 있다.

1. 문화시설의 설치 및 관리·운영

제6조(사업의 위탁) ① 구청장은 제5조제1항 각 호의 사업에 대해서 전문성을 제고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출판문화진흥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예정)

제13조(운영의 위탁) ① 구청장은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출판문화진흥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구청장은 수탁자의 운영실적 등을 평가하여 위탁기간을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에는 위탁조건, 관리책임 및 그 밖에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위탁계약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